

채무조정서

문서번호:	결정일자:
주 소:	우)145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번길 19-27, 8층 810호(상동, 광장프라자)
발 신:	(주)어반파이낸스대부
수 신:	귀하
제 목:	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결정 통지

1. 채무조정내역

1) 조정내용

(단위 : 원)

대출명	계좌번호	조정	원금	비용	이자	연체이자	합계	이율
		전						
		후						

2) 변제계획

(단위 : 원)

상환 유예	<input type="checkbox"/> (Y / N)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예기간 :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예이자 :	상환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원리금균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금균등 <input type="checkbox"/> 만기일시상환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상환기간 (상환개월)	년 월 일 ~ 년 월 일 (0개월)	납입시작일	년 월 일
매월 납입일		월납입액	

3) 납입계좌정보

입금은행	계좌번호	예금주명

2.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

아래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제1항 (채무조정 합의의 해제)

1. 3개월 이상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*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2.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3.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4.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5.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6. 채무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7.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8.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귀 사로부터 채무조정을 승인받음에 있어 귀 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위와 같이 상환기로 합의합니다.

채무자 :	(인 또는 서명)	채권금융회사 :	(주)어반파이낸스대부 (인)
주민등록번호 :		주 소 :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7번길 19-27, 8층 810호(상동, 광장프라자)
주 소 :			

년 월 일